

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2월 2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따르면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
- 우리 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(영유아보육법)의 위임 없이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, 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위법성을 해소하고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2조 삭제
 - 제22조(위탁의 제한) 군수는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